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2. 3 선고 2021가단5017511 판결 [구상금 및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씨에스

담당변호사 정우근

피 고 1. A

2. B

3. C

4. D

피고 2 내지 4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스엠파트너스

담당변호사 육삼신

변 론 종 결 2021. 11. 19.

판 결 선 고 2021. 12. 3.

주 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103,636,027원 및 그 중 24,640,948원에 대하여 2021. 1. 11.부터, 76,004,939원에 대하여 2021. 2. 8.부터 각 2021. 6. 8.까지 연 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 C, D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B, C,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피고 A과 피고 B, C,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7. 8. 체결된 매매계약을 99,2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B는 49,600,000원, 피고 C, D은 각 24,8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피고 A에 대한 구상금청구에 관하여

가. 청구의 표시

1) 원고는 피고 A과 사이에 피고 A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데 신용보증하기로 하고, 2012. 11. 20. 보증원금 85,000,000원(후에 74,800,000원으로 변경됨), 보증기한 2013. 11. 19.(후에 2020. 11. 13.로 변경됨), 대출과목 기업운전일반자금대출, 대출은행 E은행으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2019. 10. 25. 보증원금 24,400,000원, 보증기한 2020. 10. 23., 대출과목 기업일반자금대출, 대출은행 F은행으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 A은 위 각 신용보증약정 당시 피고 A이 대출금의 상환지체 등을 이유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원고가 피고 A을 대위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피고 A은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한 그 이행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한 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과 기타 부채채무를 변제하기로 하였다.

2) 피고 A은 위 각 신용보증서에 기하여 E은행으로부터 100,000,000원, F은행으로부터

24,400,000원을 각 대출받았다.

3) 피고 A은 2020. 10. 23. F은행에 대한 대출금 30,500,000원에 대한, 2020. 11. 13. E은행에 대한 대출금 88,000,000원에 대한 만기가 도래하였음에도 위 각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연체가 발생하였다. 원고에게, F은행은 2020. 11. 18., E은행은 2020. 12. 11. 각 보증사고통지를 하였다.

4) 원고는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21. 1. 11. F은행에게 24,640,948원, 2021. 2. 8. E은행에게 76,004,939원을 각 대위변제하였다. 피고 A은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서 채권의 집행보전 비용 등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현재 대지급금의 잔액은 2,463,330원이며, 위약금은 합계 526,810원이다.

5) 따라서 피고 A은 원고에게 103,636,027원(= 대위변제금 100,645,887원 + 대지급금 2,463,330원 + 위약금 526,810원) 및 그 중 F은행에 대한 대위변제금 24,640,948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21. 1. 11.부터, E은행에 대한 대위변제금 76,004,939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 2021. 2. 8.부터 각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인 2021. 6. 8.까지 약정 지연배상금율인 연 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2. 피고 B, C, D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에 관하여

가. 원고의 주장

피고 A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라 한다)을 2020. 7. 8. 피고 B, C, D(이하 위 피고들을 통칭할 때에는 '나머지 피고들'이라 한다)에게 매도한 행위는 피고 A의 채권자들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이고, 수익자인 나머지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된다. 위 매매계약 이후에 이 사건 부동산에 존재하였던 근저당권자 G은행의 근저당권이

말소되었으므로,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원물반환이 아닌 가액배상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위 매매계약은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사전구상권 99,200,000원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나머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원고의 채권액 중 나머지 피고들이 취득한 지분에 상응하는 금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이때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등 참조).

2) 갑 제5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A은 2020. 7. 8. 나머지 피고들(피고 B 2/4 지분, 피고 C, D 각 1/4 지분)과 사이에 피고 A이 나머지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나머지 피고들이 2020. 7. 1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 A은 채무초과 상태였고, 이 사건 부동산이 유일한 재산이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1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나머지 피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원고 등 피고 A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가 된다는 점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선의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채무자인 피고 A과 나머지 피고들이 친인척 관계에 있다거나 어떠한 이해관계에 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피고 A과 나머지 피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처음 만난 것으로 보인다.

② 나머지 피고들은 공인중개사사무소를 통하여 매물로 나와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을 알게 되었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 때에도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③ 나머지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자 G은행에 대한 피담보채무를 인수하는 등 매매대금 2,035,000,000원을 전액 지급하였다.

④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은 당시의 시가와 비교할 때 적정해 보이고, 시가에 비해 부당하게 낮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3)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악의 추정이 반복되어 선의가 인정되는 이상 나머지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있고, 원고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미정

목 차

1동 건물의 표시 서울특별시 송파구 [] []
[] 아파트 []동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

전유부분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건물 내역 철근콘크리트구조 158.705㎡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1. 서울특별시 송파구 대 237830.7㎡
1. 서울특별시 송파구 대 65184.3㎡

대지권의 종류 1, 2 소유권대지권

대지권의 비율 303015분의 84.454 끝.

